

별첨

신협 장학금 지원사업 소외계층 대상자 요건

□ 저소득가정 기준 :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
○ 저소득가정 증빙서류

<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증빙서류>

자격	증빙서류	발급기관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	수급자 증명서	행정복지센터
저소득가정 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)	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(5구간 이하)	한국장학재단
	한부모가족 증명서	행정복지센터
	청소년 한부모가족 증명서	행정복지센터
	차상위계층 확인서	행정복지센터
	기초연금수급 확인서	행정복지센터
	장애(아동)수당대상자 확인서	행정복지센터
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	국민건강보험공단
	차상위우선돌봄 증명서	주민자치센터

<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>

가구원수	소득기준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
1인	2,565,000원	92,428원	20,073원	-
2인	4,200,000원	151,148원	83,625원	152,775원
3인	5,360,000원	195,073원	137,279원	197,469원
4인	6,495,000원	236,378원	172,901원	240,050원
5인	7,557,000원	274,221원	220,149원	279,461원
6인	8,556,000원	309,777원	264,935원	318,043원

*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

※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

- 가구 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하여 아래 표보다 낮은 경우 신청 가능
-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: 건강보험료(소득수준)가 낮은 구성원의 보험료를 50% 경감하여 합산
-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(혼합 부분 참고)

※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방법

증빙서류	발급기관	비고
주민등록등본	행정복지센터	-
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건강보험공단	가족 구성원 전원 제출
건강보험 납부확인서	건강보험공단	가족 구성원 전원 제출

<추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추천 공문>

증빙서류	발급기관
학교 추천 공문	장학생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
사회복지시설 추천 공문	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(사회복지관, 아동보호전문기관, 보호시설 등)

* 저소득가정 증빙이 어려운 경우 활용 가능

□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그의 자녀

1. 장애인

☞ 확인방법 :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, 상이군경회원증, 장애진단서(전문의) 등

2. 성매매피해자

☞ 확인방법 : 성매매피해여성 쉼터·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

3. 청년·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

☞ 확인방법 :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(이수증) 등

4. 북한이탈주민

☞ 확인방법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
5. 가정폭력 피해자

☞ 확인방법 :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 확인서, 상담 확인증

6.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
☞ 확인방법 : 한부모가족증명서(읍·면·동 발급)

7. 결혼이민자

☞ 확인방법 : 국적 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관계 증명서,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-2 또는 F-5, F-6

8. 갱생보호 대상자

☞ 확인방법 :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

9. 범죄구조 피해자

☞ 확인방법 :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(결정통지서), 가족관계증명서

10. 1년 이상 장기 실직자

☞ 확인방법 :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

11.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☞ 확인방법 : 교정시설(교도소, 구치소)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

12.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☞ 확인방법 :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

13. 보호관찰 청소년

☞ 확인방법 :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

14. 노숙인

☞ 확인방법 : 관련시설(노숙인 쉼터, 상담보호센터 등)에서 받은 추천서

15. 약물·알콜·도박중독자

☞ 확인방법 : 관계기관 사실확인서

16.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

☞ 확인방법 : 관계기관 사실확인서

17. 여성 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

☞ 확인방법 : 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, 통반장 확인서(사실혼 관계 확인용) 및 배우자·직계존비속이 근로 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(실종신고서, 장애인등록증, 장애급여지급통지서, 의사 진단서, 군복무확인서, 재학증명서, 교도소 수용증명서, 형확정 판결문, 이혼소송확인서 등)

18. 난민(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)

☞ 확인방법 : 관계기관

19. 보호종료아동(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)

☞ 확인방법 : 보호종료확인서(아동양육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)

20.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(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)

☞ 확인방법 :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등

21. 기타(조손가정, 외국인 근로자,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저신용자(신용등급 7~10등급), 학교폭력 피해자, 가정 밖 청소년, 학교 밖 청소년, 중증질환자,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)

☞ **확인방법** : 가족관계 증명서, 해당기관 확인서, 주민센터 확인서류,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

□ 이혼, 학대, 가정폭력, 자살, 질병 등 경제적·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가족

☞ **확인방법** : 병원 진단서, 유관기관 확인·추천서 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탄력적 인정